(“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의 주요 요지를 통지함)

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서

사건번호 : 2020회합100063 회생
채무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리인 성낙민

채무자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63 회생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20. 8. 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동시에 성낙민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 회사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인 보고서의 요지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 위 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법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별첨 1. 관리인보고서 요지
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 등의 목록 및 시,부인표 총괄표
3.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요약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관리인 성낙민 (전화 / 02-538-6208)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관리인보고서 요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8월 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음에 따라 관리인으로 임명된 성낙민입니다.

그동안 채무자 회사가 채권단을 비롯한 이해관계인 여러분께 피해와 염려 등 누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본인은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공적인 수탁자임을 명심하고,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정과 형평의 원칙하에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채무자 회사가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사업방식은 투자자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으로 특정 투자자산을 취득하여 약정된 기간 내에 수익을 실현하여 투자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인데, 실제로는 해당 투자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익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에는 투자자 모집이 사실상 중단되어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술한 투자자모집 및 자금운영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기소되고, 재판이 약 3년 이상 진행되면서 당초 투자금 회수 계획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뢰는 물론 피투자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산 매각 등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익을 실현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과 법원의 판결 등을 기초로 투자자들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집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는 최소한의 운영자금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이후 투자자의 재산압류, 강제매각 등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2020년 4월 24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자 회사의 자산 부채 현황에 대한 조사 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의 실사조정금액 기준으로 자산은 65,266백만원, 부채는 777,496백만원이며, 청산가치는 48,087백만원, 계속기업가치는 59,149백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1,062백만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어, **신고된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에 대한 시·부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인 2020년 10월 12일까지 신고된 채권은 회생담보권은 2건에 1,423,120,000원, 회생채권은 1,508건에 85,111,790,552원이며 조세 채권은 2건에 284,284,280원입니다.

위 신고 된 회생담보권 중 1,330,721,239원은 시인하고 92,398,761원은 부인(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으며, 신고된 회생채권 중 71,631,795,282원은 시인하고 13,479,995,270원(개시전 이자 잔부 청구 3,880,054,134원 포함)은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회생사건에 제출되어 있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 등 의 목록·신고 및 시·부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할 예정입니다.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주시고 믿고 기다려 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채무자 회사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로 많은 고통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 등의 목록 및 시,부인표 총괄표 (*정정 후)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신고액 · 목록기재액	시인액	부인액	의결권인정액	비고
회생담보권		2	1,423,120,000	1,330,721,239	92,398,761	1,330,721,239	2,704,800,000원은 미확정우발채무로 의결권 부인
회생채권	회생채권	27,321	787,202,211,249	773,722,215,979	13,479,995,270	771,017,415,979	
	회생담보권 중 회생채권 인정액	(1)	-	92,398,761	(92,398,761)	92,398,761	
	소 계	27,321	787,202,211,249	773,814,614,740	13,387,596,509	771,109,814,740	
합 계		27,323	788,625,331,249	775,145,335,979	13,479,995,270	772,440,535,979	

벌금·조세채권	11	1,272,422,290				시부인대상 아님
주식·출자지분	2	2,000,000주 200,000,000				시부인대상 아님

별첨 3.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요약

2020 회합 100063 회생

채무자 :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조 사 보 고 서

조사위원 삼정회계법인

의 견 서

사 건 2020 회합 100063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서울 강남구 언주로 609 (논현동, 팍스타워)

관 리 인 성낙민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위원은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및 그 재산에 관한 경과와 현상에 대하여 조사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 년 11월 30일

조 사 위 원 삼 정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김 교 태

조 사 업 무 수 행 자 명 단

양 진 혁 회 계 사

임 규 성 회 계 사

서 울 회 생 법 원 제2부 귀중

조사위원의 의견요약

1. 조사의 개요

본 조사는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채무자” 또는 “채무자 회사”라 함)의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이른 원인과 재산상태, 채무자 회사의 경제성(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 및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0년 8월 4일을 조사기준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 회사의 개요

채무자 회사는 2007. 1. 12.경 “주식회사 골드앤리비츠”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되어 2011. 8. 23.경 현재의 법인명인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 법인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종합 재무설계 컨설팅 서비스,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업, 보험대리점, 금융자문 컨설팅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중 20% 정도는 관리 수수료 형태로 취득하고 나머지 투자금 중 80%는 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회사 발행 주식을 투자자산 형태로 취득하였으며, 위 피투자기업들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증대하면 이를 매각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과 함께 반환하는 것을 주된 사업의 내용으로 하여 왔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기존 투자금 유치 방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6년 이후 사실상 신규투자는 없으며, 이후 기존 투자자산에 대한 매각 및 정산에 대한 수익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 609 (논현동, 팍스타워)에 영업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회사는 과거 약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의 공격적인 투자자 모집으로 인해 실제 투자성과 없이 이익금을 지급하여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이후 이러한 활동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어 투자자의 재산압류, 강제매각 등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2020 년 4 월 24 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사업방식은 투자자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으로 특정 투자자산을 취득하여 약정된 기간 내에 수익을 실현하여 투자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인데, 실제로는 해당 투자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익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에는 투자자 모집이 사실상 중단되어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투자한 피투자기업들이 대부분 사업초기 단계의 소위 벤처기업으로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채무자 회사가 약정한 목표수익률의 달성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의 영업이 지속될수록 손실이 쌓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며, 추가 투자자 모집을 통한 자금의 유입이 없이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속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업구조 하에 회사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술한 투자자모집 및 자금운영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기소되고, 재판이 약 3 년 이상 진행되면서 당초 투자금 회수 계획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뢰는 물론 피투자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산 매각 등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익을 실현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과 법원의 판결 등을 기초로 투자자들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집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는 최소한의 운영자금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법인 채무자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상고심까지 확정되어 형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채무자 회사의 경영악화가 초래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배주주의 선관의무 책임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임원의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 또한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사위원의 조사일 현재, 채무자 회사의 투자와 관련된 증빙 및 회계자료의 관리 부재로 조사기준일 현재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투자자산)에 대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재판을 통해 밝혀진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위법행위는 직접적으로 채무자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재산상의 범죄행위로 특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 형사판결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

하여 채무자 회사의 경영악화가 초래된 것과 관련한 채무자 회사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채권을 특정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지배주주 및 임원진들의 경우 채무자 회사의 영업방식 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기간 내에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후속 투자종목을 내세워 투자금을 계속 모집하여 기존 투자종목의 약정 투자기간 도래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후에 모집한 투자종목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종목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투자금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함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법 제 399 조에 따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규모를 산정할 수는 없으나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채무자 회사에게 미친 손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지배주주 및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통해 확정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지배주주 및 임원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조사기준일 현재 수정 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65,266 백만원이고, 부채총계는 777,496 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712,231 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으므로 법률 제 146조 제 3항에 의거 주주 의결권 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경영진의 중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주주에 대하여는 법률 제 205 조 제 4 항이 적용되므로 현 지배주주 등에 대한 3 분의 2 이상의 자본 감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

채무자 회사가 제시한 조사기준일 현재의 재산상태와 본 조사위원이 자산, 부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를 수정한 후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채무자제시금액	재산상태 조정	재산상태조사액
유동자산	**99,251**	**(96,672)**	**2,579**
현금 및 현금성자산	123	(90)	33
단기금융상품	24	90	114
매출채권	23,178	(23,178)	-
단기대여금	57,685	(56,389)	1,295
기타유동자산	18,241	(17,105)	1,136
비유동자산	**432,702**	**(370,015)**	**62,687**
투자자산	426,329	(370,942)	55,387
유무형자산	176	(73)	103
기타비유동자산	6,197	1,000	7,197
자산 총계	**531,953**	**(466,687)**	**65,266**
부채 총계	**599,102**	**178,460**	**777,496**
자본 총계	**(67,149)**	**(645,147)**	**(712,231)**
부채와 자본 총계	**531,953**	**(466,687)**	**65,266**

6. 우발채무(보증채무)의 내역

(1) 미발생구상채무

채무자 회사의 부채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나, 보증제공회사로부터 피보험자에게 대지급이 발생할 때 확정되는 구상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채권자명	원금	개시전이자	합계
서울보증보험	2,705	-	2,705

(2) 진행 중인 소송 현황

2020 년 8 월 4 일 현재 채무자 회사가 제시한 소송내역 중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31 건이며, 소송사건 대부분은 일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투자금반환 소송으로 소송가액은 11,606 백만원입니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토 항목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00 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 1 항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 일 이내에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이전 6 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제 2 항 제 1 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제 140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제 1 항 제 100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은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 2 항 제 100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 본문에 규정된 60 일을 1 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 3 항 제 100 조 제 1 항 4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 월을 1 년으로 한다.

본 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02 조 (어음채무지급의 예외)

제 1 항 제 100 조 제 1 항의 규정은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1 인 또는 여러 명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항 제1항의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관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본 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03 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제 1 항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을 제 3 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 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가보통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보통 또는 본등록을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항 제 1 항의 규정은 권리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보통 또는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 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04 조 (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본 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8. 채무자 회사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산정

조사기준일 현재의 채무자 회사 재산을 청산가치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재산상태조사액	청산조정	청산가치
유동자산	**2,579**	**(486)**	**2,093**
현금및현금성자산	33	-	33
단기금융상품	114	-	114
단기대여금	1,295	(259)	1,036
기타유동자산	1,136	(227)	909
비유동자산	**62,687**	**(16,692)**	**45,994**
투자자산	55,387	(16,586)	38,801
유형자산	103	(95)	7
기타비유동자산	7,197	(11)	7,186
자산 총계	**65,266**	**(17,179)**	**48,087**

9. 채무자 회사 사업의 수익성 분석 및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 산정

(1) 계속기업가치 산정요약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준비년도를 포함한 향후 5 년간(2020 년~2024 년) 미래수익흐름과 성장모형을 이용한 회생기간 이후의 현금흐름 추정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인율은 조사기준일인 2020년 8월 4일 현재 5 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1.31%에 위험프리미엄 6.5%를 적용한 7.81%를 적용하였으며, 회생기간 종료시 청산을 가정하여 이후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동 절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하였는 바,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기준일 현재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영업현금흐름 현재가치	49,863
잔존가치	-
비영업자산 처분의 현재가치	9,286
계속기업가치	**59,149**

(2) 추정손익계산서

준비년도인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채무자 회사의 추정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준비년도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69,326**	**103**	**6,918**	**15,744**	**44,748**	**1,813**
매출원가	-	-	-	-	-	-
판매관리비	4,266	428	849	979	1,458	552
영업이익	**65,060**	**(325)**	**6,069**	**14,764**	**43,291**	**1,261**
영업이익률	93.85%	-315.19%	87.73%	93.78%	96.74%	69.56%

(3) 추정 순영업현금흐름

채무자 회사의 향후 순영업현금흐름은 준비년도인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의 5 년간 추정된 손익을 바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영업이익	65,060	(325)	6,069	14,764	43,291	1,261
법인세비용	2,627	-	-	-	2,372	255
순영업현금흐름	**62,433**	**(325)**	**6,069**	**14,764**	**40,919**	**1,006**

10.채무변제계획(안)

(1) 변제대상 채무내역

조사기준일 현재 채무자 회사의 변제대상 채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는 채무자 회사의 1 차 채권시부인 결과를 반영한 금액이며 향후 추가적인 추완신고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1,331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49,860
	상거래채권	4,625
	손해배상채권	715,154
	특수관계인채권	303
	미발생구상채권	2,705
	조세채권	1,272
	소계	**773,919**
공익채권	종업원급여채권	4,951
합계		**780,201**

재산상태 조정 후 부채금액과 채무자 회사의 채무현황 합계액의 차이는 미확정채권으로 인한 것으로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조사 후 금액	777,496	
미발생구상채권	2,705	
채무자 회사 시인금액	**780,201**	

한편, 상기의 채무현황은 향후 추가적인 추완신고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1 차 시부인 결과 채권 시부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금액	시인액	부인액	비고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1,423	1,331	92	(*1)
회생채권	담보권중 회생채권 시인액	-	92	-	
	대여금채권	51,099	49,768	1,332	(*2)
	상거래채권	7,264	4,625	2,639	(*3)
	손해배상채권	724,479	715,154	9,325	(*2)
	특수관계인채권	303	303	-	
	미발생구상채권	2,705	2,705	-	
	소계	785,849	772,647	13,295	
합계		**787,272**	**773,978**	**13,387**	

(*1) 담보가치 초과액은 회생담보권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습니다.
(*2) 채권존부 불분명한 채권은 일응 부인하였습니다.
(*3) 회사와의 계약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일응 부인한 금액 2,634백만원 및 기타 채권존부 불분명한 채권 5백만원은 일응 부인하였습니다.

(2) 채무변제계획(안)

순영업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조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영업자산의 정상적인 회수 등을 가정하여 채무자 회사가 준비연도 및 회생기간 4 년간 변제가능한 금액으로 채무변제계획(안)을 추정하였습니다. 채무변제계획(안)은 채무자 회사의 향후 추정자금수지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위원이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추후 추완신고되는 채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관리인에 의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변제조건
회생 담보권	뉴라텍 밸류인베스트파트너	원금/ 개시후이자	원금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준비년도(2020 년) 거치 후, 제 1 차년도(2021 년)에 전액 변제한다. 뉴라텍의 경우 변제시점까지 원금의 3%를 개시후이자로 지급한다.
회생 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손해배상채권	원금/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3%를 현금변제하되, 면제 후 잔액에 대하여 준비년도(2020 년) 거치 후, 제 1 차년도(2021 년) 8%, 제 2 차년도(2022 년) 27%, 제 3 차년도(2023 년) 63%, 제 4 차년도(2024 년) 2%를 각각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	원금	원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다.
	미발생구상채권	원금	해당 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회생채권자 중 대여금채권에 준하는 방법으로 변제한다.
	조세채권	원금/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준비연도(2020 년) 거치 후, 제1차년도(2021 년)에 전액 변제한다.
공익 채권	임금채권	원금	미지급급여의 경우, 원금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준비연도(2020 년) 거치 후, 제1차년도(2021 년)에 전액 변제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경우, 원금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준비연도(2020 년)부터 4 차년도(2024 년)까지 퇴사자가 발생하는 연도에 각 퇴사자별로 전액 변제한다.

(3) 추정자금수지표

채무자 회사의 추정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영업자산의 정상적인 회수 등을 가정하고 2020년 08월부터 회생절차 개시 4 년차인 2024 년까지의 채무상환계획안 및 이를 토대로 자금수지 원천 및 자금의 운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준비연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자금의 원천						
1. 전기이월액	**147**	**147**	**168**	**100**	**169**	**792**
2. 영업활동조달	**62,433**	**(325)**	**6,069**	**14,764**	**40,919**	**1,006**
3. 비영업자산처분	**9,276**	**500**	**6,197**	**2,579**	**-**	**-**
자금의 원천 계	**71,856**	**322**	**12,433**	**17,443**	**41,088**	**1,798**
자금의 운용						
1. 회생담보권	**1,358**	**-**	**1,358**	**-**	**-**	**-**
대여금채권	1,358	-	1,358	-	-	-
2. 회생채권	**65,152**	-	**6,383**	**17,248**	**40,244**	**1,278**
대여금채권	4,138	-	331	1,117	2,607	83
상거래채권	384	-	31	104	242	8
손해배상채권	59,358	-	4,749	16,027	37,395	1,187
특수관계인채권	-	-	-	-	-	-
미발생구상채권	-	-	-	-	-	-
조세채권	1,272	-	1,272	-	-	-
3. 공익채권	**4,951**	**154**	**4,565**	**26**	**51**	**154**
임금채권(*1)	4,951	154	4,565	26	51	154
자금의 운용 계	**71,462**	**154**	**12,306**	**17,273**	**40,296**	**1,432**
차기자금이월액	**394**	**168**	**127**	**169**	**792**	**366**

*1) 공익채권 중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연도별 채무자 회사의 인원 구조조정 계획을 바탕으로 퇴자사가 발생되는 것을 가정하여 연도별로 반영함.

(4) 청산시 회생채권자에 대한 배당률

채무자 회사가 청산된다는 가정하에 회생담보권자의 배당률은 59.36%이며 회생채권자의 배당률은 5.13%(미발생구상채무, 조세채권 제외)로 추정됩니다. 단, 이는 1 차 시부인 결과에 따른 것이며 향후 추완신고 및 조사확정 재판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변제대상채무	총 배당액	배당률(*4)
회생담보권	뉴라텍(대여금채권)	1,303	1,303	100.00%
	밸류인베스트파트너(대여금채권)	28	9	33.59%
	소계	**1,331**	**1,312**	**59.36%**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49,860	2,565	5.14%
	상거래채권	4,625	238	5.14%
	손해배상채권(*1)	715,154	36,786	5.14%
	특수관계인채권	303	-	0.00%
	미발생구상채권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조세채권	1,272	1,272	100.00%
	소계(*2)	**771,214**	**40,862**	**5.30%**
공익채권	임금채권	4,951	4,951	100.00%
파산비용(*3)		**962**	**962**	**100.00%**
합계(*2)		**778,458**	**48,087**	**6.18%**

(*1) 특수관계인채권은 전액 전 경영진 관련 임금채권으로 배당하지 않음
(*2) 미발생구상채무를 제외한 경우의 배당률임.
(*3) 파산비용은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 및 공고, 송달 비용 등 기타 절차 진행 비용임.
(*4) 해당 배당률은 1 차 시부인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추후 조사확정 재판 및 추완 신고 등을 통해 변동될 가능성이 높음.

(5) 계속기업시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율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정 채무상환계획(안)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의 현가변제율은 100.35%이며, 회생채권자의 현가변제율은 7.81%(미발생채무 및 조세채무 제외)로 추정됩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변제대상 채무	변제액	변제액의 현재가치	변제율(*4)
회생 담보권	뉴라텍(대여금채권)	1,303	1,358	1,309	100.43%
	밸류인베스트파트너(대여금채권)	28	28	27	96.36%
	소계	**1,331**	**1,386**	**1,335**	**100.35%**
회생 채권	대여금채권	49,860	4,138	3,825	7.67%
	상거래채권	4,625	384	355	7.67%
	손해배상채권(*1))	715,154	59,358	54,859	7.67%
	특수관계인채권(*2)	303	-	-	0.00%
	미발생구상채권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조세채권	1,272	1,272	1,226	96.36%
	소계(*3)	**771,214**	**65,152**	**60,265**	**7.81%**
공익 채권	임금채권	**4,951**	**4,951**	**4,350**	**87.85%**
합계(*3)		**777,496**	**71,490**	**65,949**	**8.48%**

(*1) 특수관계인채권은 전액 전 경영진 관련 임금채권으로 변제하지 않음
(*2) 계속기업가정시 미발생구상채무는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매우 불확실하여 별도의 변제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음.
(*3) 미발생구상채무를 제외한 경우의 금액임.
(*4) 변제율 산정시 할인율은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상 시중은행의 가중평균 기업일반자금대출(신규취급) 이자율 2.67%(2020년 8월)를 적용함. 해당 변제율은 1차 시부인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추후 조사확정 재판 및 추완 신고 등을 통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음.

(6) 변제율과 배당률의 비교

배당률 59.36%보다 높으며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율은 7.67%(미발생구상채권, 조세채권 제외)로 청산시 배당률 5.14%(미발생구상채권, 조세채권 제외)보다 높으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청산을 통한 배당보다는 채무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이는 1 차 시부인 결과에 따른 것이며 향후 추완신고 및 조사확정재판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배당률	변제율	차이
회생 담보권	뉴라텍(대여금채권)	100.00%	100.43%	0.43%
	밸류인베스트파트너(대여금채권)	33.60%	96.36%	62.76%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5.14%	7.67%	2.53%
	상거래채권	5.14%	7.67%	2.53%
	손해배상채권	5.14%	7.67%	2.53%
	특수관계인채권	0.00%	0.00%	0.00%
	미발생구상채권(*1)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조세채권	100.00%	96.36%	(-)3.64%

(*1) 해당 채권에 대한 명목 가액은 동일하나 현재가치에 의한 차이임.

11.회생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조사위원의 의견

(1) 종합의견

(1) 조사기준일 현재의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수정 후 자산총계는 65,266백만원이고, 부채총계는 777,496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712,231백만원만큼 초과함으로 회생절차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2) 조사기준일 현재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한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59,149백만원이고 청산가치는 48,087백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1,062백만원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사가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위: 백만원)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차이
59,149	48,087	11,062

(2) 조사의 한계

본 조사위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외부자료와 채무자 회사의 결산자료로부터 산출한 과거의 살제 경험치를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한편, 객관적인 추정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본 조사위원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추정에 근거하되 그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사용한 가정들은 그 가정의 전제 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된 기업가치의 평가결과는 실제와 달라질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3) 실사의 한계

본 조사위원은 자산과 부채의 실재성과 완전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장부 및 관련 증빙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의 회계장부 관리가 미흡하여 자산 및 부채의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보완될 경우 일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